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2018년 6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 2018년 1분기

### 세무 및 법률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 2018년 1분기

[출처: 금융감독원, 2018.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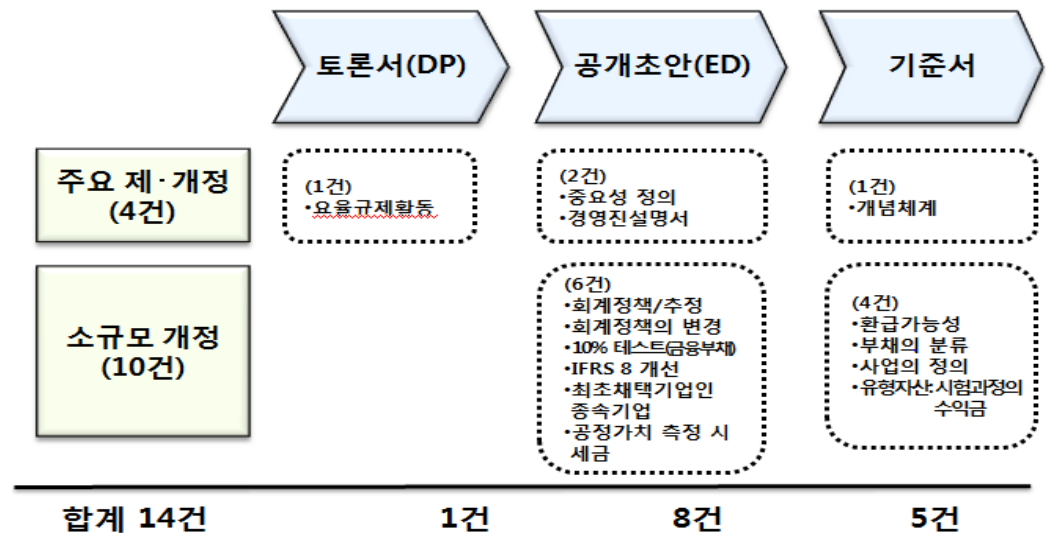
IFRS 제·개정 진행  
상황

1.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진행 상황

□ (추진 중) '18.3월말 현재 총 30건\*의 프로젝트 추진 중

- \* 주요 제·개정(4건), 소규모 개정(10건), 연구프로젝트(16건)
- (제·개정 논의) 토론회 1건, 공개초안 8건, 기준서(의견수렴 후 확정·공표 전) 5건
- (연구프로젝트) 연구파이프라인\* 8건, 활성연구 8건
- \*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21년 이내 시작 예정인 연구프로젝트

IFRS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 (완료) '18.1분기 중 1건\*의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 완료

- \* 종업원급여(IAS 19) -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

IASB 주요 논의  
내용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주요 논의 내용

(1) 주요 제·개정 관련 논의

□ '18.3월 중 '개념체계' 공표 및 '18.4월 중 '공시개선: 중요성 정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 완료 예정

- '19년 상반기 중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토론회 또는 공개초안 발표 예정

**주요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다음 산출물	예정일
① 개념체계 <sup>1)</sup> (Conceptual Framework)		개념체계 공표	'18.3 월 <sup>2)</sup>
② 공시개선	중요성 정의(IAS 1 및 IAS 8 개정) (Definition of Material)	공개초안 의견조회	'18.4 월 <sup>3)</sup>
③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표	'19 년 상반기
④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공개초안 발표	-

주: 1) 기준서에 해당하지 않음

2) '18. 3. 29. 개정 개념체계 발표

3) '18년 6월까지 소규모 개정 예정

**(2) 소규모 개정 관련 논의**

'18.3 월 현재 소규모 개정 관련 기준서 4 건, 공개초안 6 건\* 진행 중

\* 프로젝트 방향결정 1 건 포함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기준서	다음 산출물	예정일
①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Accounting Policies and Accounting Estimates)	IAS 8	공개초안 의견조회	'18.3 월 <sup>1)</sup>
② 회계정책 변경 (Accounting policy changes)	IAS 8	공개초안 발표	'18.3 월 <sup>2)</sup>
③ 환급 가능성 (Availability of a refund)	IFRIC 14	기준서 공표	'18.2 분기
④ 부채의 분류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IAS 1	기준서 공표	'18.하반기
⑤ 사업의 정의 (Definition of a business)	IFRS 3	기준서 공표	'18.2 분기
⑥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에 포함하는 수수료 (Fees in the '10 percent' test for derecognition)	IFRS 9	공개초안 발표	-
⑦ IFRS 8 '영업부문' 개선 (Improvements to IFRS 8 Operating Segments)	IFRS 8 IAS 34	프로젝트 방향결정	'18.3 월 <sup>3)</sup>

2018년 6월호

⑧ 유형자산: 시험과정의 수익금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IAS 16	기준서 공표	-
⑨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Subsidiary as a First-time Adopter)	IFRS 1	공개초안 발표	-
⑩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유의사항 : 세금 (Taxation in Fair Value Measurements)	IAS 41	공개초안 발표	-

(3) 연구프로젝트 관련 논의

연구프로그램 구성

- **활성 연구프로젝트(Active research project):**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
- **연구파이프라인프로젝트(Research pipeline):**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2021년 이내에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프로젝트
- **추가 업무 계획이 없는 프로젝트(Research projects for which no further work is planned):** 기초 평가를 마친 후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프로젝트

활성 연구 프로젝트(Active research projects)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다음 산출물	예정일
① 동일 지배하의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DP* 발표	'19.상반기
② 할인율 (Discount Rates)	연구요약발표	'18.2 분기
③ 동적 위험 관리(Dynamic Risk Management)	DP 발표	'19.상반기
④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DP 발표	'18.2 분기
⑤ 영업권과 손상 (Goodwill and Impairment)	DP 또는 ED 발표	'18.하반기
⑥ 주요 재무제표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DP 또는 ED 발표	'19.상반기
⑦ 공시원칙 (Principles of Disclosure)	프로젝트 방향결정	'18.3 월 <sup>1)</sup>
⑧ 주식 기준 보상(Share-based Payment)	연구요약발표	'18.2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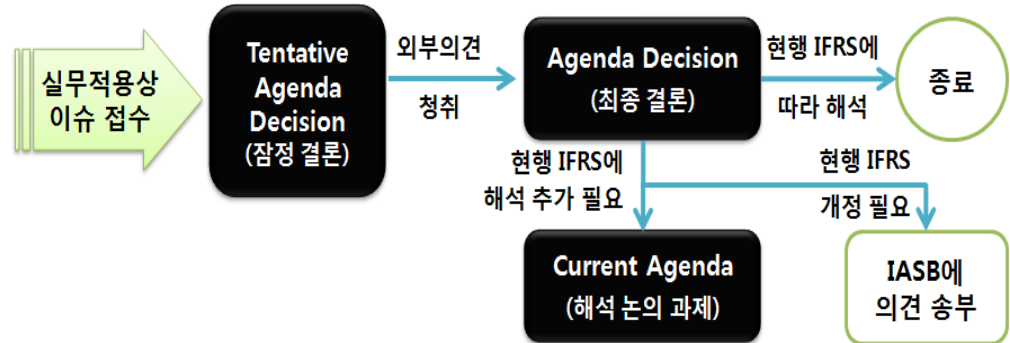
\* 토론서, Discussion Paper

주: 1) '18년 7월까지 남은 이슈에 관한 논의 진행

IFRS IC  
주요논의 내용

3. IFRS 해석위원회(IFRS IC) 주요 논의 내용

해석위원회(IFRS IC) 논의 절차



(1) 해석 논의 과제(Current Agenda)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해석서
<input type="checkbox"/> 이연법인세 - 세무상 자산과 부채	법인세 (IAS 12)
<input type="checkbox"/> 손실부담계약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원가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IAS 37)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외 세금과 관련된 지급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IAS 37)

1) 이연법인세 - 세무상 자산과 부채

- IFRS 16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비용이 세금 목적 상 공제 가능한 경우 리스개시일에 이연법인세의 인식에 관하여 질의함
  - 해당 질의는 회계정책 적용의 문제가 아닌 각 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

2) 손실부담계약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원가

- 해석위원회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 \* IFRS 15 가 IAS 11 '건설계약'을 대체함에 따라, 손실부담계약의 평가를 위해 IAS 37 을 적용
  - '회피불가능원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IASB 에 권고함

2018년 6월호

-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Cost of fulfilling)’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로 구성됨을 명시

\* ① 증분 계약이행원가, ② 계약이행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한 간접원가 배분액

-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원가에 대한 예시 제공

### 3) 법인세 외 세금과 관련된 지급

□ (쟁점사항) IAS 12 법인세의 범위를 벗어나며, 지급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비경상적 세금 관련 지급 항목에 관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① 과세 당국과 분쟁 중에 있으며, 분쟁 대상 금액에 대해 현재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② 분쟁 대상 금액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분쟁이 해소되기 전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없음

③ 분쟁의 해소 결과에 따라,

가. 기업에 유리한 해소결과가 발생한다면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며,  
나. 과세당국에 유리한 해소결과가 발생한다면 기업의 과세채무는 해당 금액으로 청산됨

□ (논의결과) 위원회는 해당 금액이 과거 사건의 결과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므로, 현행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정의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음

\* 현금의 형태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지급받거나, 과세채무를 청산함

◦ 또한 “발생 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IAS 37의 우발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 해석위원회는 동 사안이 IFRS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IAS 8의 문단 10과 11을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음

2018년 6월호

(2) 최종 결론(Agenda Decision)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해석서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계약의 수익 인식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
<input type="checkbox"/> 관계기업에 대한 유형자산 출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input type="checkbox"/>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의 표시	금융상품(IFRS 9), 재무제표 표시(IAS 1)
<input type="checkbox"/> 토지 이전을 포함하는 부동산 건설 계약에서의 수익인식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
<input type="checkbox"/>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

'18년 1 분기의 최종결론 사항들은 이전 분기의 잠정결론\*에서 논의된 내용과 동일

\* '17년 3 분기 : 부동산 계약의 수익인식, 관계기업에 대한 유형자산 출자' 17년 4 분기 :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의 표시, 토지 이전을 포함하는 부동산 건설계약에서의 수익인식,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3) 잠정 결론 (Tentative Agenda Decision)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해석서
<input type="checkbox"/> 특정 유형의 이중통화채의 분류	금융상품(IFRS 9)
<input type="checkbox"/> Load Following Swap 의 위험회피회계	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IAS 39)
<input type="checkbox"/> 단기대출과 단기신용공여의 구분	현금흐름표(IAS 7)

1) 특정 유형의 이중통화채의 분류

해석위원회는 IFRS 9 를 적용할 경우, 특정 유형\*의 이중통화채의 분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받음

\* 원금과 연간 고정이자 의 통화가 상이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

① 해당 상품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는지(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2018년 6월호

② 만약 그렇다면,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지  
☞ 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 (2) Load Following Swap 의 위험회피회계

□ 해석위원회는 IAS 39 와 IFRS 9 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Load Following Swap\*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를 받음

\* 발전소에서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전기의 실제 규모에 근거하여 전기에 대한 변동시장가격을 고정가격으로 교환하는 계약

① 예상거래가 현금흐름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highly probable) 하는데,

- 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계약단위 수량이 회피대상항목의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② 위험회피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 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 (3) 단기차입금과 단기한도약정의 구분

□ (쟁점사항) 해석위원회는 현금흐름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에 관한 질의를 받음

□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회사는 단기차입금과 단기한도약정을 보유 중이며, 단기의 계약기간(약 14 일)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사는 해당 단기한도약정은 현금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부(-)에서 양(+)으로의 잔액변동이 빈번하지 않음

□ (검토사항)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기준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음

◦ IAS 7 의 문단 8 을 적용하면, 회사는 일반적으로 은행차입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지만,

- 요구불상환 조건이며, 기업의 현금관리의 통합적 부분을 구성한다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음



2018년 6월호

- 현금관리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 현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관리를 의미함
- 부(-)에서 양(+)으로 잔액의 변동이 빈번하지 않다면 기업자금조달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

□ (잠정결론) 해석위원회는 해당 단기한도약정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요소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이는 해당 단기한도약정이 요구불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 부(-)에서 양(+)으로 잔액의 변동이 빈번하지 않다는 것은 기업자금조달활동의 형태이며, 현금관리의 종합적 부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 해석위원회는 동 사안을 기존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21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8. 6.11.(월)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18.6.11. ~ 7.23.),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령 제5조)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령 제27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18.5.29 시행)

-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년 → '21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 (현행 3년 75%, 2년 50%)
-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 (일몰) '18년→'21년

[참고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30조 및 조특령 제27조)]

■ 감면 개요

대상자	감면기간	감면율	적용기한	한도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	90%	'21.12.31.	150만원
60세 이상	취업일로부터 3년	70%	'18.12.31.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청년 연령 범위 확대(15세~29세 → 15세~34세)

■ 감면 요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동일 중소기업체에 재취업)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친족 등은 제외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법 제27조 제3항)

■ 적용·시행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

■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함

아동수당법 시행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 시작

□ 2018.9.1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법」의 실행을 위해 2018.6.20.(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2018.9.21.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 (연령) 만 0 ~ 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음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소득·재산)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월 858만원, 3억원 이하	월 1,151만원, 3억원 이하	월 1,390만원, 3억원 이하	월 1,656만원, 3억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원	13.8억원	16.3억원	18.9억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 가산

■ 신청 방법

-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 (제출서류) 아동수당신청서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2018.05.11)
  - 해외주식 매수 후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에 대한 원화과표금액을 계산할 때 연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며,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당해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
  -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 배당금 중 내국세법에 의해 전액 감면되는 배당금은 제외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도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조약 및 국조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전2101, 2018.05.15)
  -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배당금을 감면대상 배당금과 과세대상 배당금으로 구분한 후 각 배당금에 대해 내국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각 비교한 결과 감면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면율(100%) 및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 조세심판원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해당 국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총액(총배당금)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총배당금 중 내국세법에 의해 전액 감면되는 배당금은 제외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도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조약 및 국조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6월호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각각 세율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는바,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각각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액계산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우리나라가 90여개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과 1995.12.6. 제정된 국조법상 제한세율의 정의가 변경된 바 없으므로 2013.2.15.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의 개정을 전·후하여 조세조약에 명시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의 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제한세율의 적용방식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동 시행령은 다만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일부 유권해석 및 납세안내 책자 등의 제한세율 계산방법을 제시하면서 특정 문구를 들어 과세관청이 그간 제한세율 적용방식을 지속적으로 달리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유권해석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업 무 소 개

<h2 style="text-align: center;">업 무 소 개</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